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자

글 | 정태화 세무사

1.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란 납세의 무자의 최저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1) 기본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자 본인,

②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 소득금액(1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근로소득공

제)]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원(2009년부터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③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이 되며, 또한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대상이다.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형제자매 또는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가 해당되며, “생계를 같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① 2009년부터 70세 이상으로 100만원 공제,
 - ②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 ③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 100만원
 - ④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50만원
- 3)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4)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2.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사장은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세액은

-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다.

위의 김사장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①호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 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 일부터 1월
- ② 제 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 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 일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